

『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기(2015~2018년)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
-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,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구분	구미보건소	선산보건소
개별사업	○ 건강한 삶 유지기(성인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누리기(노인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나누기(취약계층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다지기(아동·청소년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준비기(임산부·영유아 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알리기(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) ○ 건강검진사업 ○ 출산장려사업 ○ 암 관리사업 ○ 정신보건사업 ○ 의료비지원사업 ○ 진료 및 검사 ○ 의·약무 관리사업 ○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○ 건강도시사업	○ 성인기 건강플러스사업 ○ 노년기 건강플러스사업 ○ 취약계층 건강플러스사업 ○ 아동·청소년 건강플러스사업 ○ 임산부·영유아 건강플러스사업 ○ 건강검진사업 ○ 모자보건사업 ○ 암 관리사업 ○ 정신보건사업 ○ 의료비지원사업 ○ 진료사업 ○ 각종 실험 및 검사 ○ 의·약무 관리사업 ○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

4. 참고사항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,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

-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서

-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변화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과 보건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
- 지역현황 분석 및 주민 의견조사 결과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중장기 추진과제로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,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,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등이 포함된 장단기 계획안으로서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사항임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역보건법

제3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·군·구의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·군·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)

-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보건의료수요 측정
 2.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
 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 4. 보건\의료의 전달체계
 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, 수립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5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)
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연차별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